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철거 · 교체 지원 등〉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10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9.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 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제10조제16호·제17호 및 제30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등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을 말한다),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을 추가하고, 세출 예산을 계상하여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목적에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 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 지원”과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업 지원”을 추가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안 제10조제16호·제17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을 말한다),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제어하는 에너지저</u>

8. ~ 10. (생 략) ③ (생 략) 제10조(구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 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 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1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 환경적 처리·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u> 8.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된 사업비의 사용) ----- ----- ----- -----. 1. ~ 15. (현행과 같음) <u>16.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저장장 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 술개발 지원</u> <u>17.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저장장 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 업 지원</u>
---	---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에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발전효율이 저하되고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6년 6월 기준, 전체 풍력 발전설비 816기 중 20년이 경과된 설비는
80기로 전체 설비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5년 후에는 208기로
약 2.6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태양광 발전설비 역시
20년이 경과된 설비가 자가용은 3,853기, 사업용은 3,921기로 집계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정책에 따라 향후 노후 태양광발
전설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생에너지원별 설비 현황 및 노후화 설비 현황]

(단위: 개소, MW)

구분	풍력		태양광			
			자가용*		사업용**	
	개소수	발전용량	개소수	발전용량	개소수	발전용량
20년 이상	80	126.1	3,853	26.9	3,921	30.3
20년 미만	736	2,020.4	353,643	2,150.0	201,577	31,347.1
계	816	2,146.5	357,496	2,176.9	205,498	31,377.4

* 태양광 설비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급사업을 통해 설치된 현황만을 반영한 것으로 발전 사업자 등은 미포함됨

** 2026.3.말 RPS 대상 설비확인 태양광 발전소 및 FIT 설비 누적 기준

이에 따라 향후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철거·교체 등에 따른 태양광 폐패널이나 풍력 블레이드 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이용·처리를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¹⁾에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 지원”과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한 사업비²⁾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서부터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폐설비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부담을 최소화³⁾ 하며,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 1. 28.>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3) 태양광 패널에는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등 회수 가능한 자원이 포함되어 있고, 풍력발전설비에는 철강, 구리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희토류,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태양광 패널 등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관리 체계⁴⁾의 적용을 받고 있고, 에너지 저장장치의 하나인 ESS의 핵심 구성요소인 배터리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7.5.27. 시행 예정)에 따른 별도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 기존의 자원순환 관련 제도와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2항제10호에 규정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통해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공사·운영·폐기 재활용 전주기 관리 강화와 폐모듈·풍력폐기물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이미 반영하였다는 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상 순환경제기본 계획,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보관·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리체계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점, 다른 자원순환 관련 법령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⁵⁾

2. 재생에너지 설비 성능 개선 등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물 및 주요 부품의 이력관리, 재활용 및 순환이용, 입지 여건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기술·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기술·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u>제30조의5(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개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물 및 주요 부품의 이력관리, 재활용 및 순환이용, 입지 여건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u>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장기간 사용에 따라 부품이 노후화되거나 발전효율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거나 주요 부품을 개선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고, 설비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현행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제도는 주로 발전설비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사·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⁶⁾ 설비의 운영 기간이나 노후화 정도에 따른 주요 부품의 교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교체·철거 이후 발생하는 설비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까지 연계하여 관리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구조물 및 주요 부품의 이력관리, 재활용 및 순환이용, 입지 여건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안 제30조의5제1항의 재생에너지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입지 여건” 및 “환경성”⁷⁾의 경우,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 및 성능관리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관리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6) 「전기안전관리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운영 상태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음.

7) 입지 여건이나 환경성은 통상적으로 설비의 입지 선정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임.

또한, 안 제30조의5제2항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철거·교체나 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국가가 직접 철거·교체나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인지, 사업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인지 법 문언만으로는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30조의5제1항과 관련하여, 주요 부품의 안전성은 「전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고, 재활용과 순환이용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입지 및 환경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기존 법률과의 적용관계 및 관리 절차가 불명확해지고 중복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3

- 재생에너지 설비는 인허가·시공·검사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로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관리 중
- (인·허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신고를 받도록 규정(전기사업법 제7조·제61조)
 - (시공·감리) 공사계획 인가·신고 수리 후, 전기공사업체(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하고,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을 배치하여 시공중 안전관리
 - * (감리원) 설계도면·기술기준 적합여부 등 발전설비 시공 중 전반에 걸쳐 안전규정 감독
 - (사용전 검사·확인) 설비 시공 완료 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안전공사) 및 시공기준에 따른 설치여부 확인(재생에너지법령, 예공단)
 - (사용중 검사·확인) 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운용 상태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 주기적 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안전공사)
 - (유지관리)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68조)
 -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령에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 부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현행 법령에서는 설비 운영기간에 따른 별도의 관리체계는 없으나, 특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노후 및 취약 설비를 관리하고 있음.

9 재생e 안전 관리 대전환 (공사·운영·폐기·재활용 전주기 관리 강화)

1 육풍·해풍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보급 체계 확립을 위해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

※ 노후설비 관리 강화, 안전한 운영기반 조성 등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마련(26.上)

○ 육상풍력 설치-운영-해체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설치단계) 주요 기기(나셀·타워 등) 설비 안전 설계 기준 강화

· (나셀) 화재 대응설비 구축을 위한 초기화재 감지장치 설치 및 방호설비 전체 동작(화재 시 소화성능 분석자료 제출 의무화) 등 대응력 강화

· (타워) 나셀 진동 실시간 감지 전자식 진동계 설치 및 주요 센서(속도계, 풍속계, 유압유·윤활유 온도 및 압력센싱) 이중화

- (운영단계) 노후 풍력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검토 및 위험설비 철거 등 조치, 원격관리체계(IoT) 구축 및 특별안전점검(위험 설비·지역) 실시

* (안) 사용전검사일 기준 20년 경과 육상풍력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전기계통, △구조물 상태, △성능 및 △주요기기 수명 등을 종합적 평가

- (해체단계) 풍력발전 설비 해체·절단·이송 관련 표준 절차 마련

- (유지관리) 발전사업자 - 유지관리 기업 간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정기적 심사(RPS점검, 정기검사)로 안정적 설비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제조사 철수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여 기술자료의 제3자 예치(에스크로)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폐기물 대량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자원순환 기반 구축

- (회수거점) 주요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전국 6개소)를 활용하여 풍력 폐기자재를 회수·보관하고, 재활용 기술개발 시 원료 공급

- (관리체계) 풍력발전기 폐부품에 대한 폐기물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물질흐름 분석 연구('27~, 국립환경과학원)로 재활용 기준과 방법 마련

- 대규모 보급에 대비하여 **해상풍력 전주기 안전·관리 방안** 마련('26.下)
 - (안전기준) 우리나라 해상 여건에 맞게 설계-제작-운송-설치-운영-해체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한국형 안전기준*** 개발
 - * 국제표준은 '북해' 기준 제작, 태풍·조수차·서남해 연약 지반 등 한국적 특성 반영
 - (안전관리) 전주기에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운영 단계(O&M)에 주요 부품에 대한 정밀한 평가 체계 도입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실시
 - (사고대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수부, 행안부 등 기관 간 역할 정립, 사고유형별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대비 태세 구축

2 태양광 공사현장 안전 및 사후관리 강화, 자가용 설비 체계적 관리

- 입지 다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관리 방안**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 (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설비시공 기준 개정, 취약시기 지붕 등 시공현장 집중점검, 현장 상시 순찰 등(노동부 안전일터지킴이 연계)
 - (사후관리) 사고발생 고위험군 대상 **특별안전점검 확대***(전기안전공사)
 - * (예) 산지, 급경사지 + 10년 이상 장기 운영설비 등 다중이용시설 설비(2년)
 - (사고대응) 피해신고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화재 등 발생시 신속 대응
 - (자원순환) 리파워링 수요 등 재활용 처리용량 대폭 확충 필요 전망, 고부가가치 소재 최대한 회수* 등 폐모듈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 * 고순도 셀분리 기술개발(~'28) : 에너지사용량 30% 감소, 처리시간 3배 단축, 순도 향상(50→99%)
 - ** 太 폐모듈에 원천감량순환이용 접근법(폐플라스틱 순환경제 모델)을 적용한 관리체계 구축

- **자가용 설비 지속 확산**을 위한 관리체계 및 서비스 강화
 - (관리) 자가용 설비 관리 시스템(REMS) 대상 설비를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량 모니터링, 계통운영 및 정책 수립에 활용
 - * (현재) 정부지원 설비 21만 개소('25년 기준 태양광 등 재생e 1.1GW) 관리
→ (개선) REGO 발급 설비 등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체 자가용 설비로 확대
 - (서비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가용 설비 설치효과 제시, 자가용 설비 설치 주택 대상 SNS 연계 서비스 추진